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06일

가좌4동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정 *아	정 *아 1992-04-05	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111번길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4-17